

일반공급 가점제 서류안내

1/2

※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분은 서류접수 기간 내 당첨자 삭제 및 계좌부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
※ 접수 기간 이후 부적격에 따른 당첨자 삭제 및 계좌부활 신청이 불가하며, 이에 따른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정당한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만 정당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.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 서류	○		개인정보활용동의서, 서약서	-	•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
	○		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	본인	• 본인발급(용도 : 당첨자 자격확인)(단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)
	○		신분증		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※ 2020.12.21.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전체포함)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	○		배우자	•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유의사항에 따라 발급)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포함하여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	•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	•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(개명자는 개명 전 서류 포함)
		○	복무확인서	본인	•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(수도권)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(군복무기간(10년 이상) 명시)
해외근무자 (단신부임)	○		해외체류(단신부임) 관련 입 증서류	본인	•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→ 파견 및 출장명령서(직인날인) •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→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 서류,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• 근로자가 아닌 경우 →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(①, ② 모두 반드시 제출) ※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※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
	○	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세대원 및 미성년자녀	• 세대원 및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 확인 ※ 제출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(개명한 경우,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)

일반공급 가점제 서류안내

2/2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	○		가점산정기준표	-	•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
		○	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피부양 직계존속	• 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(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)
		○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	•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
		○	출입국사실증명원		•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90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 확인 ※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※ 기록대조일 : 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
		○	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피부양 직계비속	• 만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(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변동사항, 세대주 및 세대원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)
		○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	•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및 혼인관계 확인 여부 (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)
		○	출입국사실증명원		•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<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> * 30세 미만 미혼 자녀 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* 30세 이상 미혼 자녀 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※ 기록대조일 : 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
		○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	•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 한 경우 (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)
		○	당첨사실 확인서	배우자	•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(1~3점)한 경우,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* (청약홈) 청약홈 > 청약소통방 > APT당첨사실 조회
		○	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		•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(1~3점)한 경우,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* (청약홈) 청약홈 > 청약자격확인 > 청약통장 > 순위확인서 발급 >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> 청약 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(청약통장 가입은행) 창구 방문 >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
제3자 대리인 신청 시	※ 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 구비서류				
	○		인감증명서	청약자	• 본인발급에 한함 / 용도 : 위임용(본인발급)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인 위임 불가
	○		인감도장		• 인감증명서와 대조 必
	○		위임장	대리인	•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(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필수)
○		신분증	•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(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)		
부직격 통보를 받은 경우		○	무주택 소명 자료 (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)	해당주택	•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건축물대장등본, 무허가건물확인서, 건축물철거결실신고서 등 해당 지자체로부터 당시의 「건축법」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이라는 확인서 또는 민원회신,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• “소형·저가주택 등”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확인서 등) •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	○	당첨사실 소명서류	해당서류	•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

※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(배우자, 직계존·비속 포함)로 간주하며, 공통/추가 서류 외 대리인 신청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.
※ 서류 접수 시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'전체포함' 또는 '상세표기'로 발급하여야 하며,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4.11.26.)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.
※ 제출 서류 중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이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
※ 서류 접수 시 자격 검증을 위해 안내 서류 외 추가로 검증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※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,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 하면 폐기합니다.